

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고발조치 등 요구 청원

한변은 오늘 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.

1. 문재인 대통령은 2022. 2. 10.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“**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**”고 하여 **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였다**.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언론인터뷰에서 **자신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, 그렇지 않은 후보에 반대한다고 하였다**.
2.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. 2. 11. 기자들에게 “윤 후보가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했는데, 앞서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. 대단히 유감스럽다”고 발언하였다.
3.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,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,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, 제85조 제1항, 제255조 제5항)
4.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,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 (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, 제84조 제1항)
5.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·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고,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법무부장관도 행정부의 구성원이 된 이상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.
6.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·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,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·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. (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)

첨부 : 청원서

2022. 2. 14.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(한변)

회장 이재원